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30
----------	--------

제출년월일 : 2024. 9.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대해 대칭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2항)

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8조)

다. 제명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소년 기본법」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8. 29. ~ 9. 18.(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5)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4. 9.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에서”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를 “납부받은 후”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및 「<u>지방자치법</u>」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u>청소년시설</u>”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u>청소년기본법</u>」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u>조례에서</u>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제7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u>납부 받은 후</u> <u>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u>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p>	<p>제1조(목적) -----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 ----- ----- ----- ----- -----.</p> <p>제2조(정의) ----- ----- ----- ----- ----- 「<u>청소년기본법</u>」 ----- ----- ----- -----.</p> <p>제3조(적용범위) ----- ----- <u>다른 법령</u> <u>이나 조례에서</u> ----- -----.</p> <p>제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납부받은 후</u> ----- ----- ----- <u>경우</u>,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p>

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의 위탁) ①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② -----
-----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정행복지원과 강지화
연 락 처	02-3153-8983